

일부 배터리 제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 재개 — 단계별 조정, 지정 면세

2026.07

Issue 5

개요

2026년 7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일부 배터리 제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¹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고[2026]20 호)(이하 “20 호 공고”)를 발표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단계별로 일부 배터리 제품의 소비세 정책을 조정하고, 기존의 일부 소비세 면제 대상 배터리 제품에 대한 과세를 재개함으로써 소비세 제도를 추가 보완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정책 조정은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전반적인 면세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의미하며, 세수 레버리지가 다시 조절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산업 사슬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Newsflash에서는 배터리 소비세 신규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을 검토하고 PwC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세수 정책 주요 내용

20호 공고의 정책 조정은 “단계별 조정, 지정 면세” 등 원칙을 채택하여 단기간 내에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관련 기업이 생산경영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배터리 제품에 대한 과세 재개, 단계별 과세 조정 실시——2026년 9월 1일부터 무수은 일차전지, 금속수소화물 니켈 축전지(수소니켈 축전지 또는 니켈수소 축전지라고도 함), 리튬 일차전지, 리튬 이온 축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VRFB)에 대해 2%의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2027년 9월 1일부터 세율을 4%로 인상합니다. 태양광전지(태양전지라고도 함)의 경우 2027년 4월 1일부터 2%의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며, 2028년 4월 1일부터 4%로 인상합니다.
2. 혁신 장려, 나트륨 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제품에 대해 지정 면세 시행——첨단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트륨 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연료 전지, 그리고 광전지 중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적층형 전지, 비소화갈륨 전지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해 계속해서 소비세를 면제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제 규칙, 다층 산업사슬의 이중과세 방지——납세자가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위탁 가공 후 회수하거나, 자체 또는 위탁 방식으로 직접 수입하여 소비세를 이미 납부한 배터리 제품을, 과세 대상 배터리를 연속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제로 사용한 수량만큼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세 기준 설정 및 이에 상응하는 규범관리 실시——감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제품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배터리 제품 소비세 감면을 최초로 신고하기 전에 납세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 국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사 기관의 검사 보고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자가 사용 단계 과세 명확화——납세자가 자체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는 과세 대상 배터리 제품을 과세 대상 배터리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배터리 이외의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타 용도(예: 시료, 건설중인자산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이동하여 사용할 때 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구체적인 과세 범위와 배터리 수입 단계 소비세 과세 세목은 20 호 공고 부록을 참조 바랍니다.

PwC 의 관찰

이번 소비세 신규 정책은 관련 기업의 소비세 세무 처리, 제품 가격 책정 전략, 전체 산업사슬 구축 및 중장기 발전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20 호 공고는 배터리 과세 소비재에 대한 공제 규칙만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사슬의 세부 상황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한 복잡한 사례와 징수관리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후속 보충 문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一)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영향

정책 조정으로 배터리 기업에 “구조적 충격”과 “전략적 유도”가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운영 비용 상승, 수익성 압박:** 주류 리튬전지 기업은 세부담 증가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전가할 수 없을 경우 4% 세율 기준으로 제품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판매 분리”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즉, 생산한 리튬전지 제품을 직접 대외 판매하는 방식), 해당 기업의 제품 가격(소비세 과세 가격)에 연구개발, 생산, 판매, 공급망 관리 등 가치사슬 전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정책 조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입니다.

- **소비세의 선 납부 후 공제로 인한 자금 점용:** 배터리 팩 생산업체가 배터리 팩 생산을 완료한 이후(즉, 소비세 납세 의무 발생 이후)에야 업스트림 업체인 전지 생산업체로부터 소비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항상 세무당국에 미리 납부해야 할 큰 금액의 소비세가 있으므로 현금 흐름에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 **특수관계거래 조세회피 위험 주요 유의사항:** 현행 규정상 경내에서 배터리를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구매 및 내수 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관계거래가 주로 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² 제 36 조에 따라 납세조정을 실시하여, 정상가격 거래 원칙에 따라 과세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가격 책정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 산업 구조 최적화:** 과도기 면세 정책이 나트륨 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신기술에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의 최고점을 선점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이 “규모 확장”에서 “혁신 주도”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과세 대상 배터리(예: 리튬전지)와 면세 대상 배터리(예: 나트륨전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코스트센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가 관리를 정밀하게 수행하며, 각 제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배터리 기업의 소비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급한 보완 필요:** 대부분 배터리 기업은 전에 장기적으로 소비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소비세의 산정 로직, 신고 절차, 징수관리 요구사항 및 수출 업무 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고 효력 발생 전 과도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³ 및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⁴ 중 배터리 업계와 직접 관련된 조항을 학습해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 발생 시점, 과세 기준, 다양한 상황별 구성과세가격의 계산, 수출 업무의 세무 처리, 납세 기한 및 신고 장소를 중점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소비세 징수 범위 주식》을 대조하여 자사 제품 라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기술 경로가

교차되거나 제품 정의가 모호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당국과 소통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과세 대상 제품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연체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과도기간 중 계약 점검 및 가격 조정:** 20 호 공고가 정식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반이 남은 지금, 기업은 이 과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 월 1 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행 중인 기존 판매 계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가격 조건에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9 월 1 일 이전에 납품을 조기 완료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운스트림 클라이언트와 새로운 가격 협상을 진행하여 소비세 신규 정책에 맞춰 가격 조건을 조정하고, 업스트림 공급업체와는 사전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예: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대납·대수취 세금증명서》, 《해관 수입소비세 전용납부서》)를 확인하여 자사의 소비세가 적법 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二)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영향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는 리튬 배터리의 주요 다운스트림 응용 분야로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세부담 전가 한계로 인한 완성차 업체(OEM) 압박:** 전기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하에 산업사슬 각 단계의 가격 협상 능력은 세부담의 귀속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업스트림 배터리 공장과 다운스트림 소비자에 대해 가격 협상 능력이 부족하면 소비세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 부분의 세부담은 완성차 업체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총이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업계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소비세 부담은 기업의 이미 얇아진 이익을 직접적으로 깎아먹어, 완성차 업체의 경영 압박과 생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 **공급사슬 구조 재구성 및 업그레이드:** 세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는 신형 배터리 기술을 계획하고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우수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은 고에너지 밀도와 고안전성을 갖춘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체 공급망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의 소비세 처리:** 현재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소비세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wC 의 초기 판단으로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구매한 배터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비세는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소비세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리튬 배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외부에서 구매한 배터리를 과세 대상 배터리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향후 순수 전기차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시점에 리튬 배터리 소비세 공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전체적으로 이번 소비세 신규 정책의 조정 폭은 상당히 큼니다.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2026 년 9 월부터 2027 년 9 월까지 1 년간 적용되는 2% 우대 세율 기간이 세금 부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완충기간입니다. 기업들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재무 및 세무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첫째 2%의 과도 세율 기간을 잘 활용하여 비용 최적화나 제품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 측면에서는, 후속 보충 실시세칙이 조속히 마련되어 기업의 세무 처리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규정 준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를 기대합니다.

주석

1.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일부 배터리 제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고[2026]2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1171/content.html>
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5081/content.html>
3.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0/c5194422/content.html>

4.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3/c5207683/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法规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7 月 24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